「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0. 12. 30 (목) 장문혁의원 외2명

나. 회부일자 : 2011. 02.28 (월)

다. 상정일자 : 2011. 02.28 (월)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장문혁 의원)

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평창군의 책무 (안 제3조)

평창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다.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군수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라.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안 제8조)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1조)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안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함.

사. 조건 등의 부과 (안 제15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원규)

가.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법률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본 조례안의 경우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에 따라 입안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및 강원도 로부터 조속한 입법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군의회 의원발의를 권고·협조 의뢰함에 따라 장문혁의원 외 2명이 서명 발의한 조례 제정안임.

다. 2011년 2월말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상위 관계법령 상충 등에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